

과업지시서

I. 과업개요

1. 과업의 개요

가. 용역명 : 신한대학교 의정부 및 동두천캠퍼스 도시계획시설(학교-도시계획시설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결정(변경)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용역

나. 위 치 : 경기도 의정부시 호암로 95[호원동] (의정부캠퍼스)

경기도 동두천시 별마들로40번길 30[상패동] (동두천캠퍼스)

다. 과업의 규모

1) 부지면적(형질변경면적)

■ 의정부캠퍼스 : 143,554㎡(약43,425평) ○ 기 존 : 144,281㎡(약43,645평) ○ 금 회 : ▲727㎡(약220평)	■ 동두천캠퍼스 : 188,141㎡(약56,913평) ○ 기 존 : 182,706㎡(약55,269평) ○ 금 회 : 5,435㎡(약1,644평)
--	---

2) 건축연면적

■ 의정부캠퍼스 : 120,368.40㎡(약36,411평) ○ 기 존 : 99,999.40㎡(약30,250평) ○ 금 회 : 20,369.00㎡(약6,162평)	■ 동두천캠퍼스 : 73,546.53㎡(약22,248평) ○ 기 존 : 70,826.03㎡(약24,425평) ○ 금 회 : 2,720.51㎡(약823평)
--	--

라. 과업 범위

1.1) 의정부캠퍼스 건축물현황 및 변경사항

구분	명칭	구 명칭	연 면 적(㎡)			비 고
			당 초	증·감	변 경	
총 계			99,999.4	20,369	120,368.4	
변경	에벤에셀관	에벤에셀관	20,089.36	증)14,000	34,089.36	7개층 수평증축 (교사시설 확충사업)
변경	벨엘관	벨엘관	13,135.33	증)2,800	15,935.33	1개층 수직증축 (대강당)
기정	말씀관	강의동	7,325.75		7,325.75	
기정	사위실	사위실	68.88		68.88	
변경	행함관	호림관	6,620.40	증)50	6,670.4	E/V 설치
변경	카르멜1관	베다니관	1,178.70	감)-330.50	848.2	증축사업 취소
기정	수의실	수의실	4.20		4.2	
기정	진리관	도서관	6,416.87		6,416.87	
기정	믿음관	본관	5,302.48		5,302.48	
변경	변혁관	실습동	978.00	증)2,934	3,912	3개층 수직증축 (교사시설 확충사업)
변경	광야관	국제어학관	1,073.96	증)636	1,709.96	2개층 수평증축 (교사시설 확충사업)
변경	은혜관	도봉관	13,637.57	증)40.5	13,678.07	지역사회서비스센터 증축
기정	빛과소금관	인수관	890.52		890.52	
변경	기도관	공학관	8,573.54	증)50	8,623.54	E/V 설치
기정	모리아관	산학관	2,466.22		2,466.22	
변경	사택동	사택동	159.84	증)189	348.84	1개층 수평증축
기정	시운관	국제관	7,191.56		7,191.56	
기정	카르멜2관	행복기숙사	4,259.92		4,259.92	
기정	교양관	교양관	572.30		572.3	
기정	재활용장	재활용장	54.00		54	



신한대학교 의정부 및 동두천캠퍼스
도시계획시설(학교-도시계획시설변경 및 학교세부시설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용역

입찰과업지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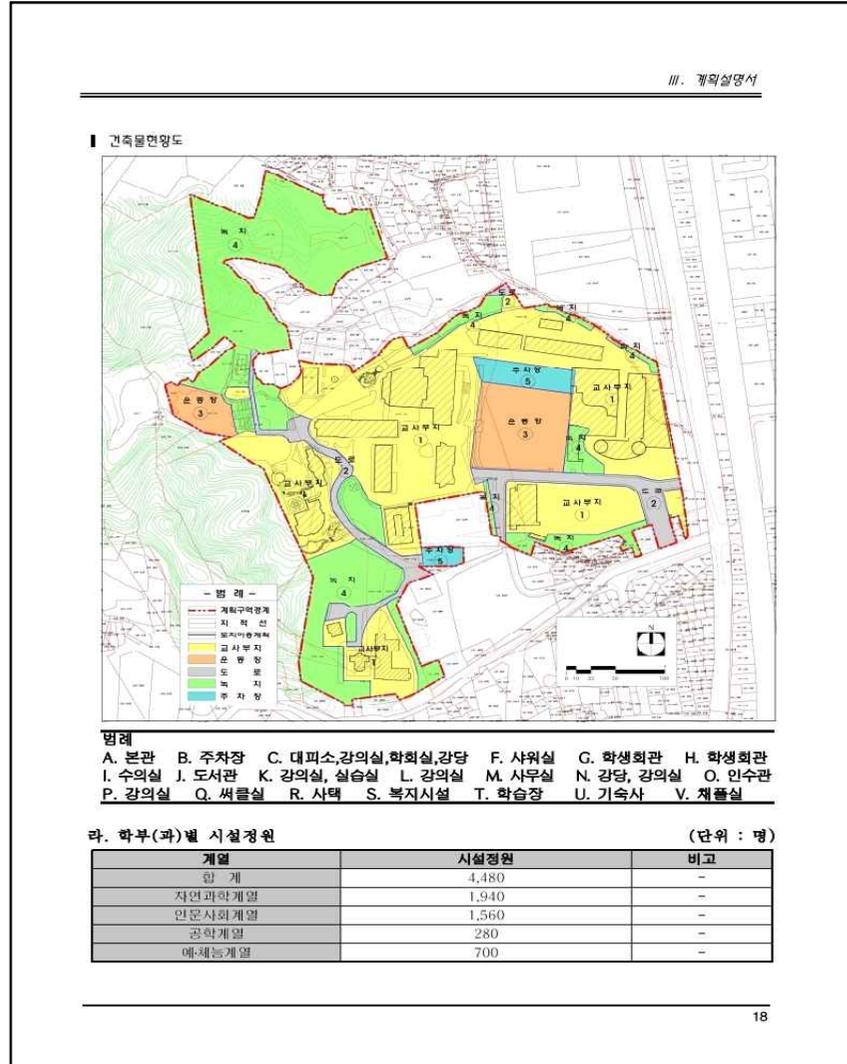
2019. 03.



1.2) 의정부캠퍼스 토지 변경사항

변경 전 면적 (㎡)	제 외 (감소) 토 지 목 록		변경 후 면적 (㎡)
	지 번	면 적 (㎡)	
144,281	호원동 119-24	327	143,554
	호원동 119-145	400	

1.3) 의정부캠퍼스 건축물현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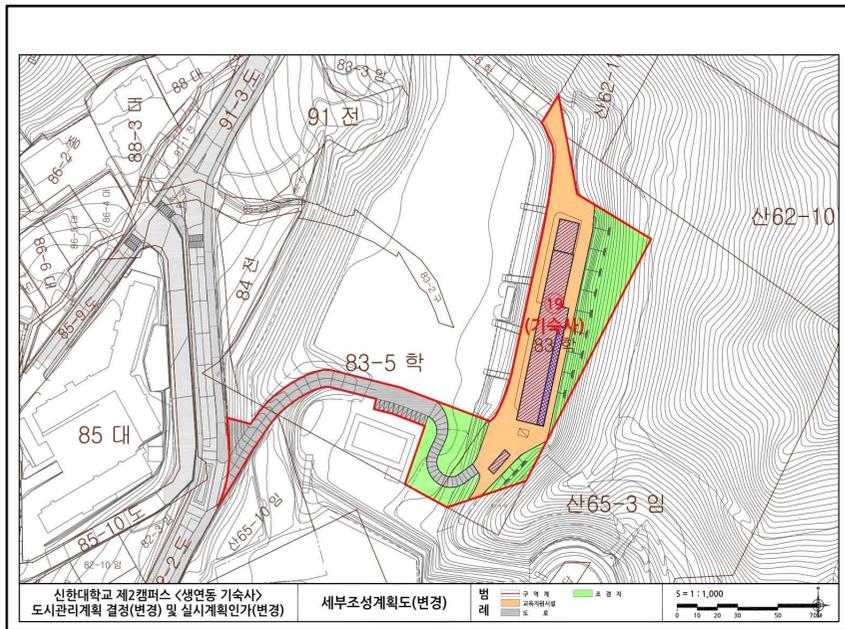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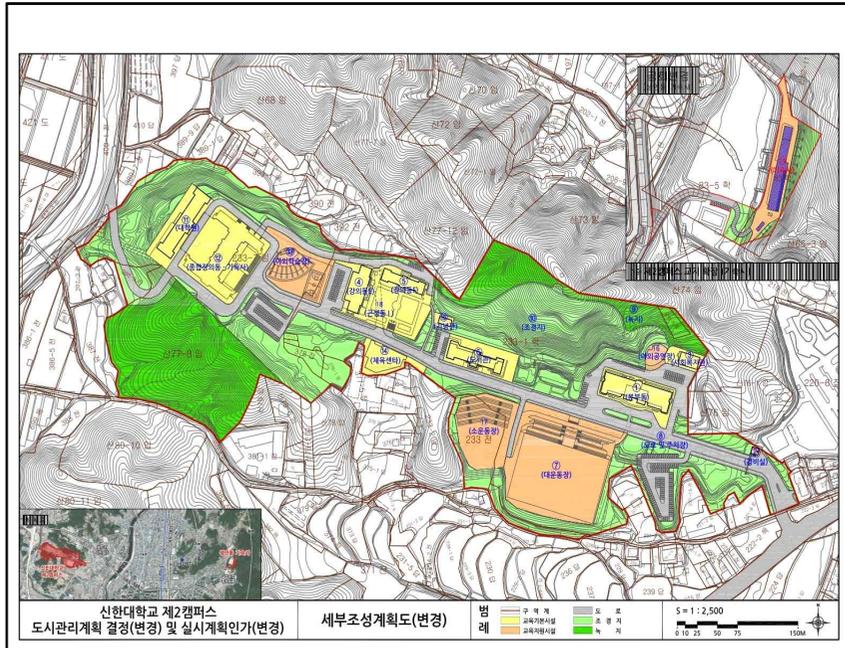
2.1) 동두천캠퍼스 건축물현황

구분	명 칭	연 면 적(㎡)			비 고
		당 초	증 감	변 경	
총 계		70,826.03	2,720.51	73,546.54	
기정	본관	10,163.79	-	10,163.79	
기정	경비실	80.48	-	80.48	
기정	사회복지관	676.08	-	676.08	
기정	브니엘관	4,011.00	-	4,011	
기정	샤론관	2,703.6	-	2,703.6	
기정	로템관	3,892.2	-	3,892.2	
기정	베데스다관	27,793.52	-	27,793.52	
기정	근생동	456.86	-	456.86	
변경	기숙사	3,583.00	증)720.51	4,303.51	식당(556.35㎡) 및 휴게공간(164.16㎡) 조성
기정	대학원	6,010.5	-	6,010.5	
기정	체육센터	11,327.00	-	11,327	
기정	기념관	128	-	128	
변경	강의동(2동)	-	증)2,000	2,000	교사시설 확충사업 (227-1~3번지 계획)

2.2) 동두천캠퍼스 토지 변경사항

변경 전 면적 (㎡)	편입토지목록		변경 후 면적 (㎡)
	지번	면적(㎡)	
182,706	상패동 227-1	474	188,141
	상패동 227-2	468	
	상패동 227-3	1,187	
	상패동 산76	3,306	

2.3) 동두천캠퍼스 건축물현황도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의정부 및 동두천 도시계획시설(신한대학교) 실시계획(변경) 인가로 인하여 발생할 각종 문제점을 검토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함으로써 구역 및 주변지역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대학교 마스터플랜의 내용을 반영한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서, 대학의 발전계획에서 비전으로 설정한 국내최고의 인성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인재양성의 요람이라는 장래의 역할을 토대로 학교의 기능 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의 조성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행정절차를 이행함으로써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용역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가. 과업의 규모

-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 학교(대학교)] 경미한 변경
- 도시관리계획 [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나. 과업의 범위

- 기초조사 (현황조사 및 측량)
- 도시관리계획(변경)[도시계획시설 및 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 도시계획시설 변경(시설경계조정)
 - 도시관리계획 도서작성
 - 계획설명서(기초조사, 환경성검토, 교통성검토, 경관검토 보고서) 작성
 - 지형도면 및 지적고지도 작성
 - 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 변경사업계획서 작성
 - 신청도서 작성(도면, 내역서 등)
 - 수리계산서 작성
- 각종 성과품 작성
- 관련부서(기관) 협의
 - 인·허가업무
 - 현장안내 및 설명
 - 기타 관련 업무

다. 과업기간 : 계약서 체결일로부터(착수일) 180일(6개월)

3. 과업성과품 작성자

본 과업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부분(도시계획, 교통, 도로·공항,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조경)에 신고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를 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교통, 도로 및 공항, 상하수도,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조경)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한다.

II. 일반사항 및 유의사항

1. 일반사항

- 가. 수급인은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해야 하며, 과업 착수 전에 착수보고서, 과업수행 계획서,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자격증사본, 재직증명서), 참여기술자 명단 및 보안각서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나. 과업 진척보고는 과업의 단계별로 착수보고, 중간보고 및 과업 완료 전에 최종보고를 해야 하며,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관계 기관과의 협의 사항 및 과업의 추진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다. 수급인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단계별 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과업의 추진 방향을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상호 이견이 있을 시 과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해석 및 결정에 따라야 한다.
- 라. 본 과업의 수행 상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일부 변경이 있을 시에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마. 모든 성과품은 제본 전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성과품 납품 후라도 발주자의 보완 요구가 있을 시에는 수급인은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 바. 발주자는 과업 수행 중 수급인의 대리인이나 고용인이 과업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사. 본 과업 수행 중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의 책임 하에 배상 또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

2. 설계변경조건

- 가.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 나.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과업의 일시정지 및 과업기간의 연장

- 가.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관계기관과의 협의지연, 승인 신청기간 소요 등으로 용역 추진이 어렵거나 불가항력으로 판단될 경우
- 나. 과업의 범위(면적, 내용, 공종 등)등의 변경을 위하여 추가과업기간이 필요한 경우
- 다.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 라. 발주처의 사정 또는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될 경우
- 마. 행정처리 상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 바.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4. 보안 사항

- 가. 모든 성과품은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유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 나. 과업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 다. 기타 과업수행 시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해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민·형 사상의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5.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과업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 행위로 간주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가. 제반 사항을 기간 내 이행치 않을 때
- 나. 계약 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된 때
- 다. 불성실한 과업 수행 및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 라. 과업의 전부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III. 세부 과업내용

1. 일반 사항

- 가. 본 과업은 신한대학교 의정부캠퍼스 및 동두천캠퍼스의 기존시설 조성 현황 및 장래의 발전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하되, 우리대학교와 사전협의 등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제반 규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나. 주요한 시설의 조성계획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학교시설사업촉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대학의 설립·운영규정 및 동시행규칙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다. 본 용역과 관련하여 참고하여야 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 시행규칙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관련 제규정(고시, 훈령, 지침 등)
 - 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시행규칙
 - 4)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 5) 산지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 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시행규칙
 - 7) 환경정책 기본법, 시행령
 - 8)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 시행령, 시행규칙
 - 9)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10)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시행령, 시행규칙
 - 11) 교육기본법
 - 12) 고등교육법, 시행령
 - 13) 대학의 설립·운영규정 및 시행규칙
 - 14)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 15) 부산광역시 도시기본계획
 - 16) 기타 제반 관련 자료
- 라. 과업 수행 내용 및 지침에 대하여는 수시로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시는 수급자는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2. 세부지침

가. 현황조사 및 측량

- 1) 현황조사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추후 도시계획시설사업 인·허가를 위한 행정 절차를 고려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실시하되 전체공정의 기초가 되는 공중이므로 고도의 정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 2) 측량공중의 모든 작업과정은 현장에서 완료하여야 하며, 중요한 표시물은 완료시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3) 과업기간 주변의 지형·지물과 각종 구조물 및 지장물을 측정하여 현황평면도 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 4) 현황측량의 축척은 1/600을 원칙으로 하고, 변경 시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나. 기초조사

- 1) 일반 사항
기초조사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 추후 세부시설조성계획수립 및 교통영향 평가를 위한 행정 절차를 고려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실시하되 전체 공정의 기초가 되는 공중이므로 고도의 정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 2) 기초조사
 - 법률적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관리계획수립 지침 등 제반 규정에 의거 실시하여야 한다.
 - 조사항목 선정 : 본 도시관리계획의 유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선정하되 주요한 세부 시설의 수요와 공급이라는 관점 및 우리학교의 「중장기발전계획」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조사방법 선정 : 각종 관련 문헌이나 통계자료의 수집을 기본으로 하되 현지답사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현지 확인 및 검증을 함으로써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 또는 공공기관에 의하여 이미 조사된 공식적인 자료의 활용 및 우리대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발전계획과 관련한 자료를 활용하여 신뢰도와 계획의 일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자료분석 : 기초조사 결과는 과거로부터의 추이, 현황, 향후전망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분석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다.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수립

- 1) 1단계 : 도시계획시설 경미한 변경
 - 대학시설 내 시급한 학교시설경계 변경 우선 진행한다.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대상부지의 토지이용현황 조사 및 분석하여야 한다.
 - 도시계획시설 변경사유 및 경미한 변경을 위한 제안서를 작성한다.
 - 제안서가 완성되면 우리학교와 협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경미한 변경 절차를 거쳐 결정고시 한다.
- 2) 2단계 : 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 도시계획시설의 경미한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우리대학교에서 확정된 건축계획을 토대로 세부시설조성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 현재의 토지이용계획을 기초로 학교시설로서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건축 부지, 도로부지, 주차장부지, 녹지 등 구체적인 세부시설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세부조성계획의 초안이 완성되면 우리대학교와 협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 도시관리계획(학교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 결정고시 한다.

3) 3단계 : 교통영향평가

- 교통영향평가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우리학교에서 확정된 건축계획을 토대로 교통 개선대책 수립을 하여야 한다.
- 교통개선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로 교통환경조사를 완료한다.
- 확정된 건축계획과 교통환경조사 자료를 토대로 심의용 보고서를 작성한다.
- 본 과업 수행 시 관계기관 협의 등에 만전을 기하여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준비하여야 한다.
-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에 따른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 1) 기초조사
- 2) 관련법규 검토
- 3) 도시관리계획결정 사유서 및 계획설명서
- 4) 세부시설조성계획도 등 작성
- 5) 지적도 및 토지조서 등 작성
- 6) 각종 영향검토
- 7) 공고 및 관련부서 의견내용 조치계획서 작성
- 8)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및 고시도면(지형도, 지적도, 임야도) 작성

마.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서 작성

- 1)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88조, 시행령 제97조 등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2)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서에는 다음의 내용 및 도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 공사설계도서(「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개략설계도서)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용도 폐지되는 공공시설에 대한 2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그 설치비용 계산서. 이 경우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와 종래의 공공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가 같은 토지인 경우에는 그 토지가격을 뺀 설치비용만 계산한다.
 - 법 제9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청취 결과

바. 관련부서(기관) 협의

- 인·허가업무
- 현장안내 및 설명
- 기타 관련 업무

IV. 성과품 납품 목록

가.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작성

- 1) 우리대학교의 기능 발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경계 및 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작성은 세부시설조성계획도 및 건축계획 등을 토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및 제규정에 적합하게 편집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2)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에 포함되는 모든 도서의 규격과 작성 방법은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나. 교통영향평가서 작성

- 본 대상지의 교통-개선대책 수립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관한 세부 시행지침 등 관련법령, 국도종합건설계획, 당해지역의 도시계획, 기타 법령에 의한 제반시설계획, 시설기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교통개선대책 수립내용을 보고서화 하여,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심의 시 문제점이 없도록 교통영향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성과품 내역

- 1)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학교(대학교)] 경미한 변경 결정도서 5부
- 2) 도시관리계획 [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신한대학교)] 결정(변경)도서 5부
- 3) 교통영향평가서 5부
- 4) 성과품 CD-ROM - 1식

V. 교통영향평가 용역 과업지시서

1.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신한대학교 의정부캠퍼스 실시계획(변경)인가로 인하여 발생할 각종 문제점을 검토·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함으로써 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이에 따른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등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며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교통편의 증진을 도모토록 교통영향평가(변경심의) 용역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과업의 내용

- 가) 교통영향평가 실시
- 나) 교통영향평가 심의
- 다) 성과품 작성

3. 과업수행 일반사항

가) 용역수급자의 성실 등의 의무

- 1) 용역수급자는 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의 질적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
-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발주자에게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하고, 착수계 제출 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된 착수계 2부(1부 사본)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계(계약일자, 착수일자, 완수예정일자, 계약금액 등 계약서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 용역비 산출내역서(전체금액은 계약금액과 동일하게 작성)
 - 용역수행예정공정표
 - 용역수행대리인(책임기술자)계 제출
 - 참여기술자 현황(기술자명단, 자격증사본)
 - 보안각서
 -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보안사항

- 1)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 2)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장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 3)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4)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 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5) 타 기관 협의를 위하여 배포한 용역성과품은 대외에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 6)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4. 업무수행

가. 관련 부서 협의 충실

- 용역수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부서와 수시로 협의하고, 그 의견을 충분히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나. 자료조사 성실

- 용역수급자는 과업을 진행함에 있어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여 평가의 질을 높여야 하며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최신시설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 회의참석 등

- 용역수급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해당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설명하고, 각 분야별 기술 사항에 대하여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질의에 답변토록 하여야 한다.

라. 보고 등 의무성실

- 용역수급자는 아래 각 사항에 대하여 사전보고 후 검토된 자료에 의거 과업을 진행한다.
 - 기술인력 구성에 관한 사항
 - 새로운 기술도입에 관한 사항
 - 기타 지시 받은 사항
- 본 과업 진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전문가 및 관련기관 공무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사업책임기술자는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관련기관과 협의사항 및 추진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마. 자료제출 성실

- 용역수급자는 과업수행 중 심의회 등을 위하여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시 이에 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관계사항 숙지 의무

- 가. 용역수급자는 본 과업지시서 내용과 본 용역 시행관련 전반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용역수급자가 책임을 진다.
- 나. 용역수급자는 각종 인허가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인·허가 시 보완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 다. 감독관이 과업수행 중 하도급자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 라.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경미한 사항은 감독관이 별도 추가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용역수급자는 이에 따르며 이에 소요하는 경미한 비용을 부담한다.
- 마. 본 과업수행 상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일부 변경이 있을 시는 발주처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 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급자는 제반 여건 조치를 하여야하며 본 과업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용역수급자는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 사. 용역수급자는 각종행정 절차상의 승인, 협의, 인·허가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함으로 필요시 관련기관의 협의에 따른 필요한 보완 관련 자료를 용역수급자는 작성 제출해야 하며 납품 후에도 행정절차 이행이 완료되어야 본 용역과업이 완료된 것

으로 본다.

6. 변경 및 정산

- 가.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키거나 과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역수급자에게 이 사실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수급자는 발주처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이 때 과업범위의 증감이나 세부내역서 작성에 따른 용역비의 증감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 또는 정산한다.

7. 용역기간 연장

- 가. 다음과 같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용역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 과업내용 변경 등으로 용역기간 연장이 불가피 할 때
 - 발주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업중지 또는 연기의 필요가 있을 때
 - 기타 현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VI. 교통영향평가(변경심의)

1. 주요 과업내용

- 가. 최초심의 심의결과 요약
- 나. 변경심의 사유(내용항목 별로 작성한다)
- 다. 변경심의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안)(내용항목 별로 작성한다.)
- 라. 교통개선대책의 시행계획 및 구체적인 개선효과
- 마. 관계기관 협의 및 자문
- 바. 교통영향평가 심의추진
- 사. 성과품작성

2. 일반지침

- 가.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진은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나.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교통영향평가지침 등 관련법령, 국토종합계획, 당해지역의 도시계획, 기타 법령에 의한 제반시설계획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다. 통계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적용하여야 하며, 다음의 순서로 활용하고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 및 정부기관 통계자료
 - 대상지 관할 지자체 통계자료
 - 기타 공공기관 통계자료
 - 현지 조사결과
- 라. 수급인은 관련 인허가 기관과 교통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협의결과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시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마. 수급인은 교통영향평가 심의 시 및 심의 완료 후 또는 필요시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바. 수급인은 토지이용계획 수립과정에 필요한 교통분석, 가로망계획, 시설입지의 적정성여부 등을 검토하여 계획 및 평가결과의 상호보완 및 Feed-Back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사. 수급인은 감독원이 관계기관 협의를 위한 자료제출 및 회의의 참석 등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아. 본 과업은 기본구상, 기본계획, 실시설계, 타 영향성검토 등 본 과업과 병행하여 실시되는 타 관련과업과 긴밀한 검토과정을 거쳐 각 과업내용이 상호 유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감독원이 검토 요구영향 사항에 대하여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 자. 교통현황조사 및 유사시설 원단위 조사에 대한 조사개소, 조사방법, 조사내용 및 조사시기 등에 대하여는 관련 기준에 의거 실시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감독원과 사전협의하여 결정하며, 조사개소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한다.
- 차.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우리 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거한 교통영향평가 서류의 작성·제출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평가분야의 작성자와 긴밀히 협의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타. 교통영향분석 결과에 대하여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관계기관으로 부터 재평가 요청이 있을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3. 세부지침

본 과업은 교통영향평가지침에 의거 작성하되 다음 사항 중 변경에 필요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분석, 작성한다.

- 가. 최초심의 심의결과 요약
 - 1) 사업의 개요
 - 2) 교통영향평가 내용
 - 3) 교통개선대책수립에 대한 종합개선안
 - 4) 사업자, 평가대행자, 심의기관 등
- 나. 변경심의 사유(내용항목 별로 작성한다.)
- 다. 변경심의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안)(내용항목 별로 작성한다.)
 - 1) 주변가로 및 교차로
 - 2) 진·출입 동선
 - 3) 대중교통, 자전거 및 보행
 - 4) 주차
 - 5) 교통안전 및 기타
- 라. 교통개선대책의 시행계획 및 구체적인 개선효과
- 마. 보고서 작성
 - 보고서는 관련법령 및 교통영향평가지침에 의거 작성 제출하여야한다.

VII. 성과품목록

구 분	제 출 목 록	수 량	비 고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1) 교통영향평가 보고서	10부	
	2) 전산화 자료(CD)	2식	
	3) 기타 관련자료(관계기관 제출 및 요구자료)	1식	

※ 기타 발주처에서 특별히 필요하여 요청할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구 분	1개월			2개월			3개월		
	10일	20일	30일	10일	20일	30일	10일	20일	30일
1. 최초심의 심의결과 요약	■								
2. 변경심의 사유		■							
3. 변경심의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안)			■						
4. 교통개선대책의 시행계획 및 구체적인 개선효과					■				
5. 심의절차이행 및 여유기간							■	■	■